

제2장 난민인정절차 등

제5조(난민인정의 신청) ① 스스로 난민임을 인정받고자 하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은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해서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을 신청을 할 수 있다. 난민의 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난민인정신청서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다만, 이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난민인정의 결정과 관련된 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난민인정의 신청에 관하여 문의하거나 그 의사를 밝히는 외국인이 있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국가기관 공무원은 난민신청 의사를 밝히는 외국인이 있는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의 통지 등 난민신청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신청한 자에게 난민인정심사 중인 사실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난민신청자는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자격 유무와 무관하게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되기까지(난민인정불허 결정 후 이에 대한 행정쟁송이 제기된 경우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를 포함한다)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제6조(공항·항만 등에서의 난민인정의 신청) ① 「출입국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입국심사 전에도 공항·항만 또는 국경에서 난민인정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공항·항만 또는 국경에서 난민인정의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4주 이내 난민인정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항·항만 또는 국경에 머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주 이내에 입국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하 제3항 내지 제5항 삭제

③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난민인정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기간 안에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 입국 및 임시체류를 허가하여야 하고 통상의 난민인정절차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④ 공항·항만 또는 국경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기간 동안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공항·항만 또는 국경에서의 난민인정절차는 본 조항의 시간적 및 장소적 제약을 제외하고는 통상의 난민인정절차에 따른다.

제7조(난민인정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 게시 등) ① 법무부장관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 또는 외국인보호소사무소 및 공항·항만 또는 국경에 난민인정의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처리기간, 처리절차(절차적 보장을 포함한다), 결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비치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게시 등 사항은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언어로 작성하되 게시 등 사항을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통역에 의한 방법으로 게시 등 내용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8조(난민인정의 심사) ①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

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난민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하고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동성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면접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난민신청자로부터 면담내용의 녹음 혹은 녹화 요구가 있는 경우 면담내용을 녹음하거나 녹화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등을 송부 받은 때에는 법무부 내 난민전담공무원의 심사를 거쳐 난민인정의 신청이 이유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③ 법무부 내 난민전담공무원은 난민인정의 신청에 대한 심사, 난민인정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정보와 출신국 또는 지역의 정보의 수집 및 관리, 난민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 등을 담당한다.

제9조(입증책임 및 입증정도) 난민신청자는 본인이 난민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사실조사) ① 법무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난민의 인정 또는 제23조에 따른 난민인정의 취소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무부 내 난민전담공무원 또는 사무소·출장소·외국인보호소의 난민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난민의 인정을 신청한 자, 그 밖에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을 하거나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무부 내 난민전담부서의 장 또는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난민전담공무원 또는 난민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난민의 인정 또는 난민인정의 취소 등에 관한 사실 조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0조에 따른 난민의 인정 등에 관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사실의 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① 난민신청자는 변호인의 조

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난민신청자가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국고의 부담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면접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신청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14조(통역)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한국어로 충분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접 등의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통역인에게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② 난민신청자는 자비로 본인이 지정하는 통역에게 통역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난민면접조서의 확인) 난민전담공무원은 난민면접을 종료한 후 난민신청자가 난민면접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읽지 못하는 경우 통역을 통하여 그 난민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서류 등의 열람·복사) ① 난민신청자는 본인이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한 자료, 난민면접조서, 법무부장관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비밀로 분류되지 아니한 관련 국가 또는 지역의 정보, 사실조사 자료 등을 열람·복사할 수 있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은 난민신청자의 열람·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신청인 등의 신원 등 비밀의 보장) ① 난민인정절차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난민인정의 신청을 한 자와 제13조에 따라 면접 등에 동석하는 자 및 변호인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그 밖에 그 신청인 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청인 등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신청인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출신국에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난민의 인정 등)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난민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고 난민인정증명서를 난민신청자에게 교부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난민의 인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의 이유(신청인의 사실적, 법률적 주장에 대한 판단을 포함한다) 및 이

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을 포함한 난민인정불허통지서를 난민신청자에게 교부한다.

③ 난민인정 등의 결정은 난민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직권으로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난민인정 등의 결정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그 최초 6개월의 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난민신청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난민인정증명서 및 난민인정불허통지서의 교부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른 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난민신청자가 직접 수령할 뜻을 미리 표시한 경우에는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 난민신청자나 그 대리인에게 직접 교부하여야 하되, 난민신청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3개월 이내에 교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난민인정의 배제)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난민인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난민의 인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1. 유엔난민기구 외에 유엔의 다른 기구 또는 기관으로부터 보

호 또는 원조를 현재 받고 있는 자. 다만, 그러한 보호 또는 원조를 현재 받고 있는 자의 지위가 국제연합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관련 결의문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결됨이 없이 그러한 보호 또는 원조의 부여가 어떠한 이유로 중지되는 경우에 그러한 자는 그 사실에 의하여 이 협약상의 이익을 부여받을 자격이 있다.

2. 당해 난민신청자가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관할 기관에 의하여 그 국가의 국적보유에 수반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것으로 인정된 자

3. 평화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 또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제문서에서 정하여진 범죄를 저지른 자

4. 난민으로서 피난국에 입국하는 것이 허가되기 이전에 그 국가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자

5.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불허결정을 하는 경우 그 사유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한 난민인정신청불허결정서를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신원확인을 위한 보호)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난민신청자

가 자신의 신원을 은폐하여 용이하게 난민의 인정을 받을 목적으로 여권 등 신분증을 고의로 파기하였거나 거짓의 신분증을 행사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그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51조에 따라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호된 자에 대하여는 신원이 확인되는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하고, 10일 이내에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호의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그 보호를 10일을 한도로 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보호 중인 외국인의 난민인정의 신청) ① 난민신청자가 난민인정의 신청 당시 이미 「출입국관리법」 제51조 및 제63조에 따라 보호 중인 경우 그 보호기간은 난민인정의 신청을 한 때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1회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난민신청자의 보호를 해제하는 때에는 보증 등 일정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제22조(이의신청) ①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였으나 제18조제2항 또는 제19조에 따라 난민의 인정을 받지 못한 자 또는 제23조에

따라 난민인정이 취소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서에 이의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을 제29조에 따른 난민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④ 난민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⑤ 난민위원회는 직접 혹은 난민담당관을 통하여 사실조사를 행한다.

⑥ 이의신청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난민신청자가 직접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난민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증명서를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신청인의 사실적·법률적 주장에 대한 판단을 포함한다)와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교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난민위원회는 직권으로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⑨ 제8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의 심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난민신청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난민인정의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난민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자발적으로 국적국의 보호를 다시 받고 있는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후 자발적으로 국적을 회복한 경우
3. 새로운 국적을 취득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4.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를 떠나거나 또는 그 국가 밖에서 체류하고 있다가 자발적으로 그

국가에 재정착한 경우

5. 난민인정결정의 주된 근거가 된 사유가 소멸하여 더 이상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거부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만, 과거의 박해로 인한 경험 등으로 난민에게 국적국의 보호를 받도록 요구하기 어려운 인도적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무국적자로서 난민으로 인정되게 된 관련사유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종전의 상주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경우. 다만, 난민으로서 종전의 상주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기 위하여 과거의 박해로부터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에 호소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난민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외국인에게 그 사유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한 난민인정철회통지서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유엔난민기구 집행위원회의 결정) 법무부장관과 난민위원회는 난민인정절차와 이의신청절차에서 유엔난민기구 집행위원회의 난민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5조(심리의 비공개) ① 위원회 및 법원은 난민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난민신청자의 신원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난민신청자는 그 신원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위원회 및 법원에 대하여 심리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 및 법원은 그 허가여부와 절차진행의 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을 할 수 있다.

제26조(법적용례) ① 난민인정절차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난민인정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과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제27조(인도적 지위의 부여절차) 인도적 지위의 부여절차는 난민인정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난민인정의 신청과 인도적 지위 부여의 신청은 동시에 혹은 선택적으로 제출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의 신청만이 있는 경우에도 인도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이를 부여할 수 있다.

제28조(재정착난민의 수용) 법무부장관은 인도적 필요와 국제협력을 고려하여 재정착난민에 대한 수용 필요성, 규모 및 출신지역 등 주요사항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해외난민의 국내재정착을 허가할 수 있다.